

제182회 충청북도의회 (정)

2000. 12. 19
교육사회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노인맞이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2000. 12. 19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2000년 12월 16일 제출
- 회 부 : 2000년 12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병원명칭에 치매라는 질병명의 표기는 환자와 그 가족이 수침감을 느낄 우려가 있고, 병원명이 너무 길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
- 의료보험법이 폐지(2000.7.1)에 따른 관련조항의 수정과, 비급여 대상 의료수가는 의료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
 - “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”를
 - ⇒ “충청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”로
- 의료수가 징수기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
 -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(제5조제1항)
-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.(제5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□ 충청북도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

- 병원명칭 중 치매라는 질병명의 표기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치감을 줄 우려가 있어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
- 의료수가 징수기준 규정을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보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.